41.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발의	일자	:	2021년	11월	19일

□ 발의의원 : 이태손, 김동식, 김성태, 김태원, 배지숙, 이시복, 임태상,

전경원, 정천락 의원

□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22일

□ 상정일자 :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
제6차 경제환경위원회(2021년 12월 17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태손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타 지역과의 명칭 및 위상에 대한 혼란 예방과 지역 숙련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'달구벌 명인'을 '대구광역시 명장'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
- 명칭 변경(안 제1조~제8조, 안 제10조~제12조)
-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충호)

□ 적법성 여부

○「지방자치법」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조례 제명 변경은 현행 '달구벌 명인'으로 규정된 명칭을 '대구광역시 명장'으로 변경함으로써 타 지역 명장들과의 명칭 및 위상에 관한 혼란을 예방하고 지역 숙련인들의 자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.
- **안 제8조(위원회의 구성)**는 직종별로 유사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통합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임.
- **기타 조항**에서는 조례 제명 변경에 맞춰 '달구벌 명인'을 '대구 광역시 명장'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임.

□ 검토결과

- '달구벌 명인'이란 대구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,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 본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, 대구시는 지역 숙련기술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 향상, 지역 산업경쟁력 제고 및 대한민국 명장 선정에 도움을 주고자 2013년부터 지금까지 40명의 달구벌명인을 선정하였으며 월50 만원씩 5년간 총 3,000만원의 기술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.
- '명장', '명인'이라는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, 많은 시도에서 '명장'이라고 칭하는 점과 '명인' 이라는 명칭이 기술력이 더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'달구벌 명인'을 '대구광역시 명장'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.
-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,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기술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. 따라서 대구시 전략산업 및 신산업 관련 직종을 선정 분야에 포함하여 4차 산업 분야의 숙련된 기능 인력을 발굴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참고 달구벌명인 선정 현황

□ 사업개요

O 선정인원 : 5명 이내

○ 신청직종 : 34개 분야 90개 직종 * 2013년 최초 시행

○ 자격요건 : 관내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 숙련기술자

----- 《우대사항》 -

ㆍ기술장려금 매월 50만원씩 5년간 지급(개인당 총 3천만원)

·달구벌명인 증서 및 배지, 달구벌명인패 수여

•지역 숙련기술단체의 기술전수활동에 달구벌명인 참여 지원

□ 선정현황

	일반산업									공예						서비스							
분야	합계	소	기계 가공	차량 철도	금 = 재 <u>:</u>	 속 류	건축	섬유 제조	패션	에너 지	산업 환경	품질 관리	소 계 기	모	목 칠 공 예	자 수 공 명	보 전 랐 다 소	화훼자식	소	이미용		조리	
직종		계	정밀 측정	자동 차정 비	표면 처리	용접		하까	패션 디자 인	에 너 지	환경 관리	품질 관리		자기					계	이용	미용	요리	제 과 제 빵
인원	40	19	1	3	1	1	2	4	4	1	1	1	8	1	2	1	1	3	13	2	5	3	3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							
해 당	없 은							

5. 토론요지

O 해당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O 해당 없음.

7. 심사결과

O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O 해당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O 해당 없음.